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557호 2021. 3. 12. (금)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800호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1
- 정선군 조례 제2801호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3

□ 발행 : 정선군청 기획관 (전화:560-2213, FAX:560-2592)

조 례

제271회 정선군의회(2021. 2. 24.)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0호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정선군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 치안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정선군에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범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일부개정(2020.03.31.)으로 재향경우회 단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 정선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치안 및 공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규정 (제1조, 제2조)
- 지원 대상사업 및 보조금의 지원사항을 정함 (제3조)
 - 범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
 -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 학교폭력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보조금 지원신청 및 결정, 중복지원 금지, 조례의 준용 등의 사항 규정(제4조, 제5조, 제6조)

제271회 정선군의회(2021. 2. 24.) 및 제2회 조례·규칙심의회(2021. 3. 12.)에서 의결된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3월 12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801호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문화”란 군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동호회”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
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활문화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생활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단체 또는 동호회(이하 “동호회 등”이라 한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동호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동호회 등의 발굴 및 육성·지원
 2.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3.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4.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지방자치단체 간 생활문화 교류
 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동호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정선군생활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생활문화 관련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문화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생활문화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 및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안이유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정선군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규정 (제1조, 제2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 (제3조)
-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 (제4조)
- 생활문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규정 (제5조)
- 생활문화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 (제6조)
- 정선군생활문화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제7조)
- 보조금 교부 및 위원회 운영 등 조례의 준용 사항 규정 (제8조)